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23년 12월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건축구조설계 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신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1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축구조안전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5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관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지정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관</p> <p><u>< 신설 ></u></p> <p>○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p> <p>○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p> <p><input type="checkbox"/> 지정일 : 2020년 2월 2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p> <p><u>< 신설 ></u></p>	<p><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p> <p>○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p> <p style="padding-left: 20px;">-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p> <p>○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p> <p>○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재검토기한</p> <p>○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p>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